

#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하남시장

## 1. 관련 법규 및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센터의 운영)
-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등)

## 2. 제안사유

- 하남시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2025. 12. 31.)에 따라, 가족 및 다문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도모
-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별 수요와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적 개입 필요

##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가족센터 사업운영 및 관리 전반
  - 하남시가족센터 사업운영 및 관리 전반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수행사업
  - 지역특성화사업
  - 별도 예산에 의한 사업(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구분		주요 사업내용
기본 사업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가족 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 부부역할 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 이혼 전·후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가족돌봄 (온가족보듬)	- 가족상담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 위기지원)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기초학습지원, 진로설계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 공동육아나눔터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가족사랑의 날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다함께 프로그램 - 1인가구 지원사업
별도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사업 등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구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8,034,210	4,014,031	4,859,539	5,543,865	6,940,187	6,676,588
가족 영역	4,211,432	577,998	634,138	709,238	1,071,786	1,218,272
다문화 영역	1,247,834	179,402	222,634	273,340	309,318	263,140
돌봄 영역	22,574,944	3,256,631	4,002,767	4,561,287	5,559,083	5,195,176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근무인력
하남시가족센터	하남시 신장동로 15, 가족어울림터 4층	1,753.39㎡	33명

- 가족센터 공간구성

층별	시설명	시설면적(㎡)
계		1,753.39㎡
지상1층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프로그램실, 가족꿈터,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 1	409.27㎡
지상2층	대회의실, 준비실,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 2	455.92㎡
지상3층	가족센터 프로그램실 1, 2, 다목적실 1, 2	339.64㎡
지상4층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가족교육실, 테라스	548.56㎡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심사영역 및 배점(3개 영역, 7개 심사지표)

심사영역	수탁자 적격성 (30)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지역사회 공신력(20)	총점
심사지표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시설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	지역사회 관계	100
배점	18	12	6	12	18	14	20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함

## 4.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분석한 결과, 공공성(2)에 비해 효율성(5)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 사료

분석 기준	분석 내용	분석결과	비 고	
F0 F0 F0	㉠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높음	지역주민의 가족 갈등 해소, 가족관계 증진 등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 서비스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음
	㉡ 서비스 수혜대상	한정적인 주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 대상 주민의 범위	높음	아동노안한부모다문화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 대상이 매우 광범위함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 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보통	위탁 기간 5년으로 재위탁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이 가능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보통	전체 프로그램 중 일부는 일시적 대체 가능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중단 시 돌봄 공백으로 인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효 율 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 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높음	가족, 복지 전문 민간기관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자원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 향상 기대 가능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 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민간위탁에 따른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및 자부담, 후원금 등 기타 세입 충당을 통해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함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 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높음	운영실적, 프로그램 참여율, 만족도 등을 정량·정성 평가할 수 있어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용이함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높음	복지 분야 민간기관 다수 존재,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만 확보되면 공개 모집을 통한 효율적 선정 가능
	㉩ 관리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높음	정기 평가 및 실적 보고, 보조금 집행 점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가능

※ 하남시 사무위탁 관리지침 p.10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안) 참고

### ○ 검토의견

- 「하남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
- 하남시가족센터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돌봄, 다문화가족지원 등 가족의 생애주기와 형태에 따른 통합적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가족센터는 높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므로, 지자체 직영보다는 가족 및 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관련 법령 및 조례

### 1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3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 5 아이돌봄지원법

-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 6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제9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신설 2017.06.08.>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2017.06.0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06.08.>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17.06.08.>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7.06.08.>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7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③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7.06.08., 2020.9.29.>

## 8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
-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5.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3.5.1.>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3.5.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3.5.1.>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